

1999. 12.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1.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가. 예산(안) 편성중점방향

-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조정
-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편성
- '99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편성

<세입예산>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증액 계상
- 중앙지원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 등 계상

<세출예산>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 정부지원사업비 조정 반영
- 기타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세출소요 반영

나.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55,526,735	100	1,042,514,601	100	13,012,134	1.2
○ 일반회계	795,729,925	75.4	769,175,543	73.8	26,554,382	3.5
○ 특별회계	259,796,810	24.6	273,339,058	26.2	△13,542,248	△5.0
-공기업특별회계	207,668,614	19.7	221,549,312	21.2	△13,880,698	△6.3
-기타특별회계	52,128,196	4.9	51,789,746	5.0	338,450	0.7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55,526,735	100	1,042,514,601	100	13,012,134	1.2
지방세수입	147,521,000	14.0	147,521,000	14.2	-	-
세 외 수 입	274,039,237	26.0	286,374,447	27.5	△12,335,210	△4.3
지방교부세	148,254,182	14.0	145,324,906	13.9	2,929,276	2.0
지방양여금	72,326,940	6.9	72,326,940	6.9	-	-
보 조 금	358,825,376	34.0	336,407,308	32.3	22,418,068	6.7
지 방 채	54,560,000	5.2	54,560,000	5.2	-	-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55,526,735	100	1,042,514,601	100	13,012,134	13.3
인 건 비	53,299,311	5.2	54,787,198	6.1	△1,487,887	△2.0
물 건 비	43,938,653	4.2	44,196,281	4.4	△257,628	9.6
이 전 경 비	285,154,380	26.2	272,824,112	27.3	12,330,268	8.4
자 본 지 출	408,590,577	38.0	396,112,638	36.6	12,477,939	17.6
융자 및 출자	31,154,232	8.0	82,988,212	9.0	△51,833,980	-
보 전 재 원	57,906,723	5.6	57,906,723	6.3	-	-
내 부 거 래	27,694,182	2.5	25,706,155	2.7	1,988,027	4.6
예비비및기타	147,788,677	10.3	107,993,282	7.6	39,795,395	55.0

2. 예산(안) 내역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555억 2,673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5.4%로 7,957억 2,992만 5천 원, 특별회계가 24.6%인 2,597억 9,681만원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795,729,925	100.0	769,175,543	100.0	26,554,382	3.5
지방세수입	147,521,000	18.5	147,521,000	19.2	-	-
세외수입	84,871,928	10.7	83,360,507	10.8	1,511,421	1.8
경상적세외수입	19,236,269	2.4	18,444,819	2.4	791,450	4.3
임시적세외수입	65,635,659	8.2	64,915,688	8.4	719,971	1.1
지방교부세	148,254,182	18.6	145,324,906	18.9	2,929,276	2.0
지방양여금	72,326,940	9.1	72,326,940	9.4	-	-
보 조 금	325,195,875	40.9	303,082,190	39.4	22,113,685	7.3
지 방 채	17,560,000	2.2	17,560,000	2.3	-	-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8%(15억 1,142만 1천 원)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29억 2,927만 6천 원)

보조금 7.3%(221억 1,368만 5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259,796,810	100.0	273,339,058	100.0	△13,542,248	△5.0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89,167,309	72.8	203,013,940	74.3	△13,846,631	△6.8
경상적세외수입	27,177,669	10.5	36,620,236	13.4	△9,442,567	△25.8
임시적세외수입	161,989,640	62.4	166,393,704	60.9	△4,404,064	△2.6
지방교부세	-	-	-	-	-	-
지방양여금	-	-	-	-	-	-
보 조 금	33,629,501	13.0	33,325,118	12.2	304,383	0.9
지 방 채	37,000,000	14.2	37,000,000	13.5	-	-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6.8%(138억 4,663만 1천원)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0.9%(3억 438만 3천원)가 증액 계상되었음.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795,729,925	100.0	769,175,543	100.0	26,554,382	3.5
인 건 비	51,893,036	6.5	53,380,923	7.0	△1,487,887	△2.8
물 건 비	42,356,327	5.3	42,567,597	5.5	△211,270	△0.5
이 전 경 비	245,994,629	30.9	233,996,791	30.4	11,997,838	5.1
자 본 지 출	405,692,471	51.0	391,908,143	51.0	13,784,328	3.5
용 자 및 출 자	4,856,700	0.6	4,856,700	0.6	-	-
보 전 재 원	13,336,391	1.7	13,336,391	1.7	-	-
내 부 거 래	27,694,182	3.5	25,706,155	3.4	1,988,027	7.7
예비비 및 기타	3,906,189	0.5	3,422,843	0.4	483,346	14.1

○ 성질별 세출예산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2.8%, 0.5% 감소한 반면

이전경비는 5.1%(119억 9,783만 8천원)

자본지출은 3.5%(137억 8,432만 8천원)

내부거래는 7.7%(19억 8,802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1%(4억 8,334만 6천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음.

(단위: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비 고
합 계	795,729,925	769,175,543	26,554,382	3.5	
1000일반행정비	74,460,523	74,385,881	74,642	0.1	
2000사회개발비	252,140,979	236,982,800	15,158,179	6.4	
3000경제개발비	355,011,376	343,752,161	11,259,215	3.3	
4000민방위비	28,696,986	29,102,986	△406,000	△1.4	
5000지원및기타경비	85,420,061	84,951,715	468,346	0.6	

○ 기능별 세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일반행정비는 0.1%(7,464만 2천원)

사회개발비는 6.4%(151억 5,817만 9천원)

경제개발비는 3.3%(112억 5,921만 5천원)

민방위비는 △1.4%(4억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0.6%(4억 6,834만 6천원)이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었음.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가경지구택지 미분양에 따른 수입감소와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기정예산대비 35.6%(185억 7,072만 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용자금 조기회수와 시군용자지원 감액에 따른 기정예산대비 2.8%(46억 9,00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독립육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업무추진비 절감액 30%를 감액 계상하였음.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에 시군의료진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음.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민간용자금 602만원을 계상함.

다. 수정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578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555억 7,252만 4천원의 규모로

행정자치부의 노근리대책추진 보조금 3,736만 9천원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료기반확충 보조금 842만원이 계상되었음.

3. 검토의견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55억 2,673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425억 1,460만 1천원보다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에서 교부결정 내시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 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 피한 법정경비와 목적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세입예산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25억 1,460만 1천원보다 1.2% 증가한 1조 555억 2,673만 5천원 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265억 5,438만 2천원) 증가한 7,957억 2,992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은 순환수렵장 초과 수입금과 증평산업단지조성 이자수입, 지방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반환금 수입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앙지원사업비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 부족사업비와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135억 4,22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경택지지구 미분양 및 택지분양수입 이월금 감소등에 따른 것입니다.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30% 절감액과 조기퇴직자의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1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및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중앙에서 추가로 내시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상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육성·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한 것으로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99. 12. 3일자로 민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680백만원을 반환받아 지방재정공제회에 재출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설치근거 및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둘째,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을 정신보건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한후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흡수운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자칫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명시이월 관련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중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게임산업기본계획용역”과 “충북 사이버트레이드구축” 및 “청주과학대학진입로확포장”등의 사업에 대하여 이월 계상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동절기 사업추진으로서

도로포장이나 건축물 공사는 부실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진행 중인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해빙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문의면 미천5리 진입로 포장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시행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공기도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됩니다.

다섯째, 국비지원사업비 절감 활용사례로서

지방도 2차선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의 국비사업비로 각각 감액하여 이원 - 심천간 지방도 사업, 내수교차로, 선평교 개축 사업비로 재투자한 것은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충북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 권장할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 7,448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하며,

수정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향후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